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47

발의연월일: 2020. 7. 7.

발 의 자: 장철민·김진표·임오경

박영순 • 윤미향 • 최종윤

안호영 · 맹성규 · 양원영

이수진(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병원체 등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화학물질 등의 건강 장해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병에 걸려 그 동거하는 친족에게 감염병이 전염된 경우에도 그 친족의치료를 위한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근로자가 건강 장해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모자 보건법」에 따른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 등을 출산한 경우 및 근 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감염병에 걸려 그 동거하는 친족에게 감염병이 전염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고, 그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제43조제5항제1호, 제91조의12부터 제91조의25까지 신설 등).

법률 제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업무상 질병"을 "업무상 질병과 제91조의12 및 제91조의19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한다.

제43조제5항제1호 중 "제40조제5항 및 제91조의9제3항"을 "제40조제5항, 제91조의9제3항, 제91조의14제2항 및 제91조의21제2항"으로 한다. 제3장의3(제91조의12부터 제91조의18까지) 및 제3장의4(제91조의19부터 제91조의2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3 태아의 건강손상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제91조의12(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등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를 출산한 경우(이하 "태아의건강손상"이라 한다)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1. 「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미숙아
- 2. 「모자보건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선천성이상아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자녀 제91조의13(보험급여의 종류) ① 태아의 건강손상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36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족급여, 제6호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제7호에 따른 장의비 및 제8호에 따른 직업재활급여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91조의14부터 제91조의17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 제91조의14(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태아의 건강손상이 발생한 근로 자에게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③ 근로자의 자녀(제91조의1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 관은 태아의 건강손상이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 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 제91조의15(휴업급여) 휴업급여는 태아의 건강손상이 발생한 근로자에 게 그 자녀의 간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 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1조의16(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의 자녀가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장해급여는 15세 이후에 자녀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지급한다.
- ③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자녀가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 제91조의17(간병급여) ① 간병급여는 제91조의14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자녀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 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1조의18(준용) ① 태아의 건강손상이 발생한 근로자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과 제5항은 제외한다),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제1항·제3항, 제44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항·제3항, 제44조제1항, 제47조 및 제48조제1항 중 "근로자"는 "근로자의 자녀"로보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 중 "요양 중인 근로자"는 "자녀가 요양 중인 근로자"로 보며, 제51조 중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제91조의14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보고, 제53조 중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자녀를 간병하는 근로자"로, "요양기간"은 "간병기간"으로 보며, 제53조제2항 및 제54조제1항 중 "제52조"는 "제91조의15"로 보고, 제56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중 "제52조"는 "제91조의15"로 보고, 제56조제1

항 중 "재요양을 받는 사람"은 "재요양을 받는 자녀를 간병하는 근로자"로, 제3항 중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자녀"로 본다.

- ② 태아의 건강손상이 발생한 근로자의 장해급여 및 간병급여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은 제외한다), 제58조, 제59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7조제3항 중 "장해등급의 근로자"는 "장해등급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보고, 제58조제1호 중 "사망한 경우"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로 보며, 제60조제1항 중 "수급권자"는 "수급권자의 자녀"로 본다.
- ③ 태아의 건강손상이 발생한 근로자의 보험급여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과 제2항은 제외한다),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제4항은 제외한다)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7조의2, 제88조부터 제90조까지, 제90조의2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8조제1항 중 "근로자"는 "근로자의 자녀"로, "제57조"는 "제91조의16"으로 보고, 제83조제1항제1호 중 "요양 중인 근로자"는 "자녀가 요양 중인 근로자"로 보며, 제84조제3항제2호중 "제40조제5항 또는 제91조의9제3항"은 "제91조의14제2항"으로 보고, 제90조의2제1항 중 "제40조"는 "제91조의14"로, "재요양을 받은사람"은 "자녀가 재요양을 받은사람"으로 본다.

제3장의4 감염병 전염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 제91조의19(감염병 전염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려 그 근로자와 동거하는 친족(사실상 혼 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감염병이 전염된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근로자가 감염병에 걸린 사실을 인지하고도 전파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제91조의20(보험급여의 종류) ① 감염병 전염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36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휴업급여, 제5호에 따른 유족급여, 제6호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및 제8호에 따른 직업재활급여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91조의21부터 제91조의24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 제91조의21(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근로 자로부터 감염병이 전염된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③ 근로자와 동거하는 친족을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의료기관은 그 감염병 전염이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 제91조의22(장해급여) 장해급여는 근로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감염병에 전염되어 치유된 후 그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

게 지급한다.

- 제91조의23(간병급여) ① 간병급여는 제91조의21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1조의24(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감염병 전염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장의비의 비용과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1조의25(준용) ① 감염병 전염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하여는 제40조 (제1항과 제5항은 제외한다),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제1항 · 제 3항, 제44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3조 제1항 · 제3항, 제44조제1항, 제47조 및 제48조제1항 중 "근로자"는 "근로자와 동거하는 친족"으로 보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 중 "요 양 중인 근로자"는 "동거하는 친족이 요양 중인 근로자"로 보며, 제 51조 중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제91조의21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동거하는 친족"으로 본다.
 - ② 감염병 전염에 따른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장의비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은 제외한다), 제58조, 제59조(제1항은 제외한다), 제60

조 및 제7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7조제3항 중 "장해등급의 근로자"는 "장해등급의 동거하는 친족이 있는 근로자"로 보고, 제58조제1호 중 "사망한 경우"는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한 경우"로 보며, 제60조제1항 중 "수급권자"는 "수급권자의 동거하는 친족"으로 본다.

③ 감염병 전염에 따른 근로자의 보험급여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3 6조(제1항과 제2항은 제외한다),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제4항은 제외한다)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7조의2, 제88조부터 제90조까지, 제90조의2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8조제1항 중 "근로자"는 "근로자와 동거하는 친족"으로, "제57조"는 "제91조의22"으로 보고, 제83조제1항제1호 중 "요양 중인 근로자"는 "동거하는 친족이 요양 중인 근로자"로 보며, 제84조제3항제2호 중 "제40조제5항 또는 제91조의9제3항"은 "제91조의21제2항"으로 보고, 제90조의2제1항 중 "제40조"는 "제91조의21"로, "재요양을 받은 사람"은 "동거하는 친족이 재요양을 받은 사람"으로 본다.

제112조제1항제1호 중 "제36조제1항"을 "제36조제1항, 제91조의13제1항 및 제91조의20제1항"으로 한다.

제113조 전단 중 "제36조제2항"을 "제36조제2항, 제91조의13제2항 및 제91조의20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아의 건강손상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 12부터 제91조의18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29일 이후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염병 전염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9 부터 제91조의2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와 동거 하는 친족이 그 근로자로부터 감염병이 전염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①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u>업무</u>	<u>업무</u>
<u>상 질병</u> 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	<u>상 질병과 제91조의12 및 제91</u>
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조의19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u></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	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
정 및 지정취소 등) ① ~ ④	정 및 지정취소 등)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⑤ 공단은 제1항제2호 및 제3	⑤
호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12개월의 범	
위에서 진료제한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40조제5항 및 제91조의9제	1. <u>제40조제5항, 제91조의9제3</u>
<u>3항</u> 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u>항, 제91조의14제2항 및 제91</u>
기준을 위반하여 제45조에 따	<u> 조의21제2항</u>
른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2. ~ 5. (생 략) ⑥·⑦ (생 략) <u><신 설></u>

<신 설>

<신 설>

2. ~ 5.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제3장의3 태아의 건강손상에 따

른 보험급여의 특례

제91조의12(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등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를 출산한 경우(이하 "태아의 건강손상"이라 한다)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1. 「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미숙아
- 2. 「모자보건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선천성이상아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자녀
- 제91조의13(보험급여의 종류) ① 태아의 건강손상에 따른 보험 급여의 종류는 제36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족급여, 제6호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제7호에 따른 장의비 및 제8호에 따른 직업재활급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91조의14부터 제91조의17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91조의14(요양급여) ① 요양급 여는 태아의 건강손상이 발생 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 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근로자의 자녀(제91조의1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 재보험 의료기관은 태아의 건 강손상이 업무상의 재해로 판 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 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91조의15(휴업급여) 휴업급여는 태아의 건강손상이 발생한 근 로자에게 그 자녀의 간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 급하지 아니한다.

제91조의16(장해급여) ① 장해급 여는 근로자의 자녀가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 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해급여는 1 5세 이후에 자녀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지급한다.

③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 권자의 자녀가 장해상태가 호 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 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권자 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 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

제91조의17(간병급여) ① 간병급 여는 제91조의14에 따른 요양

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자녀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로 간병을 받는 경우에 그 근 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8(준용) ① 태아의 건강 손상이 발생한 근로자의 요양 급여 및 휴업급여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과 제5항은 제외 한다), 제41조제1항, 제42조, 제 43조제1항 • 제3항, 제44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3조부 터 제5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항 · 제3항, 제44 조제1항, 제47조 및 제48조제1 항 중 "근로자"는 "근로자의 자녀"로 보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 중 "요양 중인 근로자" 는 "자녀가 요양 중인 근로자" 로 보며, 제51조 중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제91조의14에 따른 요양급여

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 보고, 제53조 중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자녀를 간병하는 근로자"로, "요양기간"은 "간병기간"으로 보며, 제53조제2항 및 제54조제1항중 "제52조"는 "제91조의15"로보고, 제56조제1항중 "재요양을 받는 사람"은 "재요양을 받는 자녀를 간병하는 근로자"로, 제3항중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의 자녀"로본다.

② 태아의 건강손상이 발생한 근로자의 장해급여 및 간병급 여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은 제외한다), 제58조, 제59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7조제3항 중 "장해등급의 근로자"는 "장해등급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보고, 제58조제1호 중 "사망한 경우"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로 보며, 제60조제1항 중 "수급권자"는 "수급권자의 자

녀"로 본다.

③ 태아의 건강손상이 발생한 근로자의 보험급여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과 제2 항은 제외한다), 제76조부터 제 78조까지, 제80조(제4항은 제외 한다)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 의2,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7조의2. 제88조부터 제90조 까지, 제90조의2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8조제1항 중 "근로자"는 "근로자의 자녀" 로, "제57조"는 "제91조의16"으 로 보고, 제83조제1항제1호 중 "요양 중인 근로자"는 "자녀가 요양 중인 근로자"로 보며, 제8 4조제3항제2호 중 "제40조제5 항 또는 제91조의9제3항"은 "제91조의14제2항"으로 보고, 제90조의2제1항 중 "제40조"는 "제91조의14"로, "재요양을 받 은 사람"은 "자녀가 재요양을 받은 사람"으로 본다.

제3장의4 감염병 전염에 따른 보 험급여의 특례 제91조의19(감염병 전염에 대한

<신 설>

<신 설>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 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려 그 근로자와 동 거하는 친족(사실상 혼인관계 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감염병이 전염된 경 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근로자가 감염병에 걸린 사실을 인지하고도 전파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는 제 외한다.

제91조의20(보험급여의 종류) ① 감염병 전염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36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휴업급여, 제5호에 따른유족급여, 제6호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및 제8호에 따른 직업재활급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91조의21부터 제91조의24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여는 근로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근로자로부터 감염병이 전염된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91조의21(요양급여) ① 요양급

-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 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다.
- ③ 근로자와 동거하는 친족을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 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감염병 전염이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 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제91조의22(장해급여) 장해급여는 근로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감 염병에 전염되어 치유된 후 그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91조의23(간병급여) ① 간병급 여는 제91조의21에 따른 요양 급여를 받은 근로자와 동거하 는 친족이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

<신 설>

<신 설>

<신 설>

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 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24(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감 염병 전염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의비의 비용과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25(준용) ① 감염병 전염 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과 제5항은 제외한다),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제1항·제3항, 제44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항·제3항, 제44조제1항·제3항, 제44조제1항, 제47조 및 제48조제1항 중 "근로자"는 "근로자와 동거하는 친족"으로보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중 "요양 중인 근로자"는 "동

거하는 친족이 요양 중인 근로 자"로 보며, 제51조 중 "제40조 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 람"은 "제91조의21에 따른 요 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동거하 는 친족"으로 본다.

② 감염병 전염에 따른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장의비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은 제외한다), 제58조, 제59조(제1항은 제외한다), 제60조 및 제7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7조제3항 중 "장해등급의 근로자"는 "장해등급의 동거하는 친족이 있는 근로자"로 보고, 제58조제1호 중 "사망한 경우"는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한 경우"로 보며, 제60조제1항 중 "수급권자"는 "수급권자의 동거하는 친족"으로 본다.

③ 감염병 전염에 따른 근로자의 보험급여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과 제2항은 제외한다),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제4항은 제외한다)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전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7조
의2, 제88조부터 제90조까지,
제90조의2 및 제91조를 준용한
다. 이 경우 제78조제1항 중
"근로자"는 "근로자와 동거하
는 친족"으로, "제57조"는 "제9
<u>1조의22"으로 보고, 제83조제1</u>
항제1호 중 "요양 중인 근로
자"는 "동거하는 친족이 요양
중인 근로자"로 보며, 제84조제
3항제2호 중 "제40조제5항 또
는 제91조의9제3항"은 "제91조
의21제2항"으로 보고, 제90조의
2제1항 중 "제40조"는 "제91조
의21"로, "재요양을 받은 사람"
은 "동거하는 친족이 재요양을
받은 사람"으로 본다.
레112조(시효) ①

-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
 1. 제36조제1항,

 여를 받을 권리
 항 및 제91조의
- 2. ~ 5. (생략)
- ② (생략)
- 제113조(시효의 중단)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u>제36조제2항</u>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 이경우 청구가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

1. 세30소세1양, 세91소의13세1
<u>항 및 제91조의20제1항</u>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3조(시효의 중단)
제36조제2항,
제91조의13제2항 및 제91조의20
제2항